

에너지기본법 제정의 의미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 방 기 열



지난 2월 9일 많은 논란 끝에 에너지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서 이제는 우리도 각기 흩어져 있는 에너지관련 법들을 총괄하는 에너지법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동안 에너지관련 법들은 에너지원별, 기능별로 28개의 법들이 수평적 체계를 이루어 법간 연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에너지법간의 문제들을 조정하고, 나아가 지속적, 통합적 에너지정책 수행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 에너지기본법이 갖는 더 중요한 의미는 에너지문제가 국가적 아젠다(Agenda)화 했다는 점이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에너지정책 담당자와 시민단체 및 에너지전문가 등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자문위원회가 곧 발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에너지 문제가 부처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토의될 것이며, 우리나라가 나아갈 에너지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핵 폐기장같이 에너지문제를 둘러싼 이해집단간의 갈등요소들도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에너지기본법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다. 미국과 일본, 러시아 등 대부분의 강대국들은 이미 에너지정책에 대한 기본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에너지가 경제의 한 분야가 아니라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부시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15개 부처장관이 참여하여 미국의 에너지정책방향을 작성한 것도 에너지정책이 국가 운용에 얼마나 중요한 가를 시사하는 것이다.

금년도 처음 발간되는 에너지 포커스에서는 에너지 기본법의 역할을 작게나마 실천한다는 취지에서 에너지정책 특집을 마련하였다. 에너지 정책의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이슈들을 분석하고 에너지정책 시행에 따른 시사점을 찾는 데 노력을 경주하였다. 나아가 본 특집은 에너지정책결정자나 관련 분야의 종사자들에게 로드맵 역할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